

업무 수탁자의 합리적 선정 기준과 위탁 취소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 16조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 정하며,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 에는 일반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 동 조례 제6조 내지 제8 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종합의견입니다.

□건설기술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전 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 리 대상 공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00 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요시설공사, 조경공사, 기계설비 공사, 치수공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의 시 행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단 체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이들 소규모 건 설공사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예 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 관계공무원의 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체계의 확립등 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다만, 조별 내용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 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철 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에 따 른 재원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건설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단계적 감축 운영 등이 업무추진 추이에 따라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 및 조치 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('99. 10. 30)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실 건 설공사의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 려는 것임.

- 4. 집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 관한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 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 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(감 리)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 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소규모공사”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 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(이하 시장이라 한다.) 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2.“감독업무”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 를 말한다.
- 3.“주요시설물공사”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 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- 4.“조경공사”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 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·인조목·인

<p>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·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</p> <p>5.“기계설비공사”라 함은 건축물·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·위생·냉난방·공기조화·기계기구·배관설비 등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</p> <p>6.“치수공사”라 함은 하천 제내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소규모공사 감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4조(업무의 위탁)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주요시설물 공사 2.조경공사 3.기계설비 공사 4.치수공사</p> <p>제5조(운영지원)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</p>	<p>1. 심사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○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0일 회부 ○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0년 7월 3일 상정 의결)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주택국장 양갑) 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('99.4.30)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(건설교통부훈령)에 의하여 시행하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을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.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수립절차를 규정함.(안 제3조) -주요반영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· 도시경관의 제고 및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· 동선·녹지·공공시설·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· 일조·통풍·사생활권보호,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-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립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함. ○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을 정함.(안 제6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,000세대 내지 3,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되 지역특수성이나 주변여건(도로구획, 생활권역, 행정구역)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. -근린주구 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지구중심을 설치하고,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으로 함. -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고, 면적은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으로 함. ○ 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
--	--

의안 번호	605
----------	-----

2000년 7월 일
도시관리위원회